#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서



매니지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성유(이하 "갑"이라 한다)와 연예인 \_\_\_\_(이하 "을"이라 한다)는 매니지먼트 전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(이하 "본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#### 제 1 조 [목적]

본 계약은 을이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, 갑이 이러한 매니 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[용어의 정의]

본 계약에서 "매니지먼트"라 함은 매니지먼트 회사가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, 방송.광고 출연을 포함한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계약 교섭 및 체결, 담당매니저, 코디네이터, 차량이나 의상제공, 경호 등의 적절한 지원, 당해 연예활동을 통하여 취득하는 수입의 수령, 관리 및 분배 등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제 3 조 [연예활동의 범위]

을의 연예활동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나,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- 1. 패션쇼, 광고 등의 모델출연
- 2. 배우, 성우, TV탤런트, 사회자로서의 활동
- 3. 작사, 작곡, 연주, 가창이나 기타 뮤지션으로서의 활동
- 4. 기타 위와 관련된 활동

#### 제 4 조 [적용범위]

- 1. 본 계약의 적용범위는 한국을 포함하는 전세계지역으로 한다.
- 2. 을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, 을은 새로운 주소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3.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언제든지 갑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 5 조 [독점적 위임]

을은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권한을 갑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한다. 을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어떠한 연예활동도 할 수 없다.

## 제 6 조 [갑의 지휘감독권]

- 1. 갑은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.
- 2. 제1항의 지휘감독권에 기하여 갑은 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기획, 활동장소, 내용 및 제3자로부터 수행하는 보수의 액수 및 기타 조건을 결정한다.

## 제 7 조 [수입]

1. 을이 모든 연예활동을 통하여 취득하는 수입은 갑과 을이 30 : 70의 비율로 분배한다. 이 때, 갑과 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갑과 을이 각자 부담한다.

2. 갑은 을이 모든 연예활동을 통하여 취득하는 수입을 수행하여 대행수수료, 제1항에 따른 을의 몫, 기타 세액을 공제한 후 매월 말일 을에게 교부한다.

## 제 8 조 [을의 의무]

- 1. 을은 자기의 재능, 실력들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갑의 적절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2. 을은 자기의 모든 연예활동계획에 관하여 사전에 갑과 상의하여야 한다.
- 3. 을이 갑을 통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직접 창작과 같은 기타 연예활동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, 을은 그러한 제3자에게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, 지체없이 갑에게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4.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동의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.
- 5. 을은 을의 이미지 및 상업적 성공을 위하여 갑이 마련한 인터뷰, 사진 촬영, 홍보 및 기타 유.무상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.

# 제 9 조 [갑의 책임]

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절하게 매니지먼트권 한을 행사하여야 한다.

#### 제 10 조 [특약사항]

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사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
- 2. 연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
- 3.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수입을 목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행위

#### 제 11 조 [비밀준수의무]

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# 제 12 조 [계약기간]

- 1.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- 2.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통지하지 아니하는 한,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의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# 제 13 조 [해지]

- 1.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 - 가.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
  - 나, 자신 또는 상대방에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ㅇ제집행, 화의, 회사정리, 파

산 등의 개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다.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.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# 제 14 조 [위약금]

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, 을은 갑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외의 위약금으로 100,000,000(일억)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

# 제 15 조 [불가항력]

을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,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갑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MM동 MM로 MMM-MM

상호명 : 성유 엔터테인먼트 (211-85-39715)

대표이사 : 민 훈 (인)

을 주소 :

주민등록번호 :

이름 : (인)